

## 2. 都市計劃施設基準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48號 1994. 3. 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결정의 범위) ①시설은 그 성질에 따라 위치 및 면적만을 결정하거나 입체적 규모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확장에 대한 지장여부와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의 제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소”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본문·제1호·제2호 및 제3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21조의4의 제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25조·제27조·제28조 및 제30조중 “삭도·케도사업법”을 각각 “삭도·케도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호중 “온도·기압·풍향등”을 “온도·기압·풍향 및 항공기 소음의 영향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본문 및 제1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중기”를 각

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가목(3)중 “유스호텔” 다음에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고, 동목(4)중 “극장·진열관·조각등”을 “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으로 하며, 동목(5)중 “대중음식점·다방·무도장·음악감상실·목욕탕·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변소·안내표지등”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변소·안내표지·금융업소·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위락시설(다만,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설치할 수 있다”를 “제4조제2항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6) 기타 (1) 내지 (5)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이 규칙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제54조의3의 제목·제1항본문 및 동항제3호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를 “일반주거지역(유스호스텔에 한한다)·전용주거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54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으로, “축산법 제25조”를 “축산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시장·정기시장·대형점”으로 한다.

제56조제7호중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기시장(2일이상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을 말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제1호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기구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가급적 수요지의 중심부분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0조중 “저장소”를 “저장소(저장능력 30톤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호중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의 설치에 대하

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대중음식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중음식점·다방·무도장등은 제48조제1항제4호(5)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락시설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청소년시설은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 □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와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이제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성질에 따라 위치 및 면적뿐만 아니라 입체적 규모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나.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까지는 시장·운동장·철도·공공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기공급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인 아닌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의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6조제3항).
- 다.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통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야외음악당·예식장·공연장·건축법상 위락시설(투전기사업소 및 카지노업소는 제외)·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금융업소 등을 추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고 유원지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함(제48조).
- 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범위에 정기시장·대형점을 추가하고, 이제까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여 공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며, 정기시장과 가축시장등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및 제56조).
- 마. 이제까지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시설에 배전사업소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설치후 배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기구가 설치된 배전사업소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제67조제4호).
- 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을 공용의 청사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82조).  
(건설부 제공)